

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3 월 12 일

여 수 시 장

2024.3.12



여수시 조례 제2047호

붙임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

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 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단체”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3. “가정 밖 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4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청소년쉼터”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② 제1항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·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·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
2.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3.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이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 사업 등)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
2.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
3.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
4.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
5.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
6.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 한 사항은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7조(청소년쉼터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통합지원체계 활용)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·지원을 위하여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